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모든 세금업무 비대면·디지털 전환 ‘홈택스 2.0’ 본격 추진

국세청은 28일 ‘2021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비대면 납세서비스를 위해 ‘홈택스 2.0’을 추진하고, 상담·민원 절차를 개선하는 등 납세서비스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납세자의 유형·특성에 맞추어 필요한 납세절차와 도움정보를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간단한 답변으로 편리하게 신고하는 대화형 신고와 ARS와 문자를 결합한 ‘보이는 ARS’를 확대한다.

모바일 고지·납부 서비스를 확대하고, 정부공공기관의 고지내역을 한번에 확인하고 납부하는 통합플랫폼 구축에도 나선다.

126국세상담 서비스 이용 시 납세자의 대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담예약 제도를 도입하고, 카카오톡 등을 활용한 채팅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납세자가 신용대출 등으로 국제증명이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에게 국제정보를 직접 제공토록 해 편의를 높인다.

관세청, 설 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 시행

관세청은 설명절을 앞두고 1월 25일부터 상시지원팀을 편성해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설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설 연휴기간 중 기업의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갖춘다.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토록 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한다. 원래 수출신고수리후 30일 이내에 연장신고 없이 미선적시 과태료 10만원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또한,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1.28(목)부터 2.10(수)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실시한다. 20년도에는 총 3353 업체를 대상으로, 1197억원을 지원했다.

환급신청시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오후 늦은 시간 신청건은 근무시간을 연장(18시→20시)해 심사함한다. 이로써 익일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은행 마감시간(16시) 이후 환급결정건은 다음날 평일 오전 중 지급처리한다.

또한, 성실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2020년도 납세액의 50%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담보없이 관세 납기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적극 지원한다.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2월말까지 마쳐야... 월세공제도 가능할까?

외국인 근로자는 오는 2월 말까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1년간 받은 급여에 대해 최종 정산한 세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된다.

외국인 기술자는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 체결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원어민 교사도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세조항이 있는 미국, 영국 등의 거주자로서 해당 조항에서 정하는 면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주로 2년) 동안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해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일반적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공제항목은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반면 다주택자금 공제과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 항목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단 관련법 개정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외국인도 주택자금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